

2023년도 제2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14.(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최진원, 하병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2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태일 주임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14건(안건번호 제2023-165825호~16833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65825호~165834호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5835호~165852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전송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5853호~165865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65866호~165877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65878호~165882호는 웹하드, 카페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65883호~16833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25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17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3-19143호~19313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17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3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224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 하였음.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 내지 1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 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0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 내지 2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52건임.
(순번 1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기기는 실시간 방송 및 VOD를 불법으로 연결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함.
(순번 2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기기는 실시간 방송 및 VOD를 불법으로 연결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함.
본건 기기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시자가 본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 건 판매자는 본 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

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1번 내지 2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 내지 28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번 내지 4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및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0건임.

(순번 38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29번 내지 41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9번 내지 4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 내지 4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2번 내지 5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5건임.
(순번 5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 ☞☞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순번 42번 내지 5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54번 내지 5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 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4번 내지 5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9번 내지 2,5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3,253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D.P.'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81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D.P.' 시즌2의 1화 내지 6화 전체분량을 2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7. 28.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드라마 '너의 시간 속으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38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너의 시간 속으로'의 1화 내지 12화화 전체분량을 9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8.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바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10번은 웹하드에
서 영화 '바비'의 1시간 54분 전체분량을 3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
안임. 2023. 7. 19.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59번 내지 2,51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59번 내지 2,514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
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
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원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순번 59번 내지 2,51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
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65825호~16583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65835호~16585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65853호~165865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65866호~16587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65878호~16588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65883호~16833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143호~19313호(순번 1번~171번)는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2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21.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